
고용노동부 ·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

소규모 사업장 정부 재정지원사업

2026년 1월



서울노동권익센터

목 차

1. 위험성평가 컨설팅	1
2. 위험성평가 인정	2
3. 제조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	5
4. 안전일터 조성지원(제조·서비스업 고위험 개선)	7
5. 안전일터 조성지원(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)	9
6. 안전일터 조성지원(스마트 안전장비)	10
7. 안전동행 지원사업(격차완화)	13
8. 안전동행 지원사업(상생협력지원)	16
9. 안전동행 지원사업(상생협력기금)	18
10.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	20
11. 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)	22
12. 건강일터 조성지원(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) ...	24
13. 건강디딤돌	26
14. 직종별 건강진단	30
15. 뇌·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: 심층건강진단(비용지원) ...	33

※ 자료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 발췌, 가공

위험성평가 컨설팅

1. 개요

-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·평가하여 관리·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컨설팅 무료 지원(1개소당 2회 지원)

※ 지원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,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76호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

2. 대상

-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(종합건설업 및 건설공사 현장 제외)
- 전년도 공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본사
- 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

※ '24~'25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또는 '24~'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(공단 또는 위탁)을 지원 받은 사업장은 참여 제한

※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전문가(지도사, 기술사, 노무사 또는 안전보건전문기관 등)에게 의뢰하여 컨설팅 실시

3. 절차 및 내용



위험성평가 인정

1. 개요

-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험성평가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인정해주는 제도

※ 지원근거 :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,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76호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

2. 대상

-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(건설공사 현장 제외)
- 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

ⓐ 신청제한 사업장 안내

-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
- 최근 1년 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
 - ① 직·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
 - 가. 사망재해
 - 나.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
 - 다.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
 - ② 근로자의 부상(3일 이상의 휴업)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
 -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
 - 가.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
 - 나.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
 - ④ 사업주가 자진하여 인정 취소를 요청한 사업장

3. 절차 및 내용

• 인정심사 절차



• 인증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

-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1부
- 위험성평가 실시결과(표) 1부

• 인정기간 : 위험성평가 인정일로 3년

• 위험성평가 인정 시 혜택

혜택 구분	혜택 내용
산재보험료감면	• 50인 미만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, 하수도업 사업장 인정 기간 산재보험료율 20% 감면
포상·표창 추천	•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
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추가 지원	•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보조금 1,000만원 추가 지원
KOSHA-MS 컨설팅 및 실태심사 비용 지원	• 실태심사비 면제 • 컨설팅 비용 우선 지원 (50인 미만)
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여신 혜택 부여	• 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 비율 100% 적용 (실질 금리 인하 효과)

혜택 구분	혜택 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별 보증료율 0.2%p 감면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• 지원한도 상향(60억→100억)
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초 3년간 보증비율 (최대 100%) 확대 • 보증수수료(0.2%p 차감)
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한도 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기수출보험 및 신용 한도 1.5배 우대 • 보증(험)료 20% 할인
IBK기업은행 대출금리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출 금리 1.3~1.5% 감면 혜택 (대출한도 동일기업 당 150억원 이내)
한국수출입은행 대출 금리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출입 관련 대출 금리 감면 혜택(최대 0.1% 추가 우대)

제조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

1. 개요

- 위험성평가 중심의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확립 컨설팅
 - 중소기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
 -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가지 핵심 요소 이행여부를 현장방문을 통해 단계별 컨설팅 실시

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

- 경영자리더십
- 근로자 참여
- 위험요인 파악
- 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
- 비상조치
- 도급관리
-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

2. 사업대상 및 지원 횟수

- 5~49인 중심 제조·기타업 31,500개소 (50~299인도 가능)
 - 제조업 일반지원 및 업종별 특화지원: 11,840개소(5회 지원)
 - 기타업 등 [1]: 14,660개소(2회 지원)

[1]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,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, 광업, 임업, 운수·창고·통신업에 한함

※ KOSHA-MS 인증 사업장, 기존 컨설팅 실시 사업장, 비대상 업종은 대상 제외

• **(컨설팅 신청)**

- (오프라인) 안전보건공단 광역(지역) 본부에 신청서 제출

※ 관할 광역본부에서 사업장에 접수 결과 및 컨설팅 기관 배정상황 등을 안내 예정

• 팩스, 우편, QR접수, 이메일

- (온라인) <https://portal.kosha.or.kr>  -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신청

• **(컨설팅 방법)**

- (공단) 개별컨설팅 또는 공동컨설팅 방식으로 실시

• 1~4개월, 제조업 등 2~3회, 기타업종 2회, 건설업 7회

- (위탁)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단계별 컨설팅 진행

• 2~4개월, 제조업 등 5회, 기타업종 2회, 건설업 7회

안전일터 조성지원(제조·서비스업 고위험 개선)

1. 개요

- 기술·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

2. 대상

- **(제조·서비스업 고위험 개선)**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^[1]

[1]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는 별표1에서 정한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

- **(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)**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사업장, 사업주단체,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

3. 절차 및 내용

- **(제조·서비스업 고위험 개선)** 끼임, 화재·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감독·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(공단 판단금액의 70%)

※ 사업장 당 3,000만원까지 지원 가능

- 프레스, 크레인, 지게차 등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, 회전체 방호덮개 등 끼임방지시설, 환기팬·가스감지기 등 화재·폭발예방설비 등

- **(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)**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산재예방시설(안전보건자료실, 교육시설, 체력증진시설, 목욕·샤워·세탁시설 등) 설치비용 지원(공단 판단금액의 50%)

※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



안전일터 조성지원(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)

1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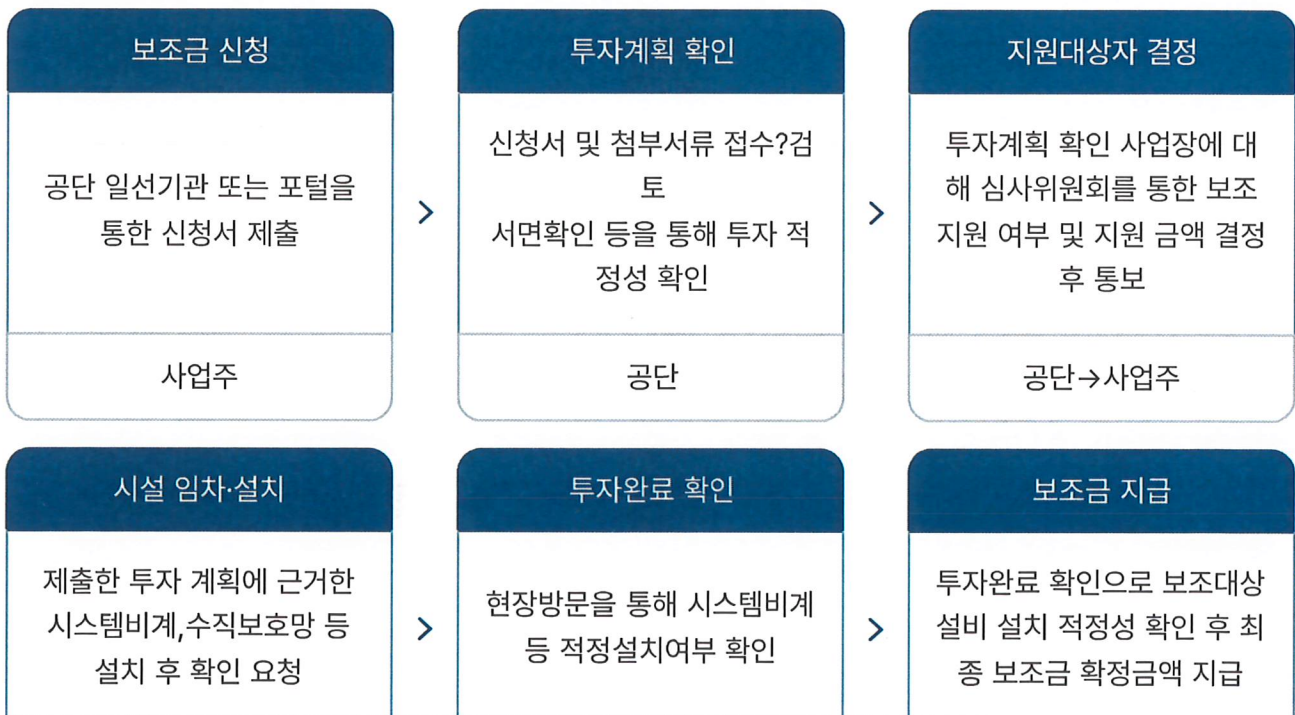
-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, 붕괴 등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 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

2. 대상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업주

3. 절차 및 내용

- 시스템비계, 안전방망, 사다리형 작업발판, 안전대부착설비, 시스템동바리 임차 및 설치비용 일부 지원
- ※ 지원한도 및 품목별 보조금 지급기준 등은 당해연도 사업 공고문 참조



안전일터 조성지원(스마트 안전장비)

1. 개요

-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

2. 대상

-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장^[1](건설업^[2] 제외)

[1]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는 별표1에서 정한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포함

[2] 건설업종의 경우 지원품목 사후관리 등을 위해 건설업 본사를 통해 지원

3. 절차 및 내용

- (지원품목) 지정품목 37종 + 자율신청품목

구분	취급품목
안전 (30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인공지능(AI)기반 인체감지시스템(2종) ※고정식: 관리품목•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(2종)•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•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• 인공지능(AI)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, 옵션: 흔들림 방지장치(2종)•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(4종)•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•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

구분	취급품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(3종) •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•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• 붕괴·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•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•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※ 관리품목
보건 (7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• 근력보조슈트 •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(2종) •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•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(2종)
자율	자율신청품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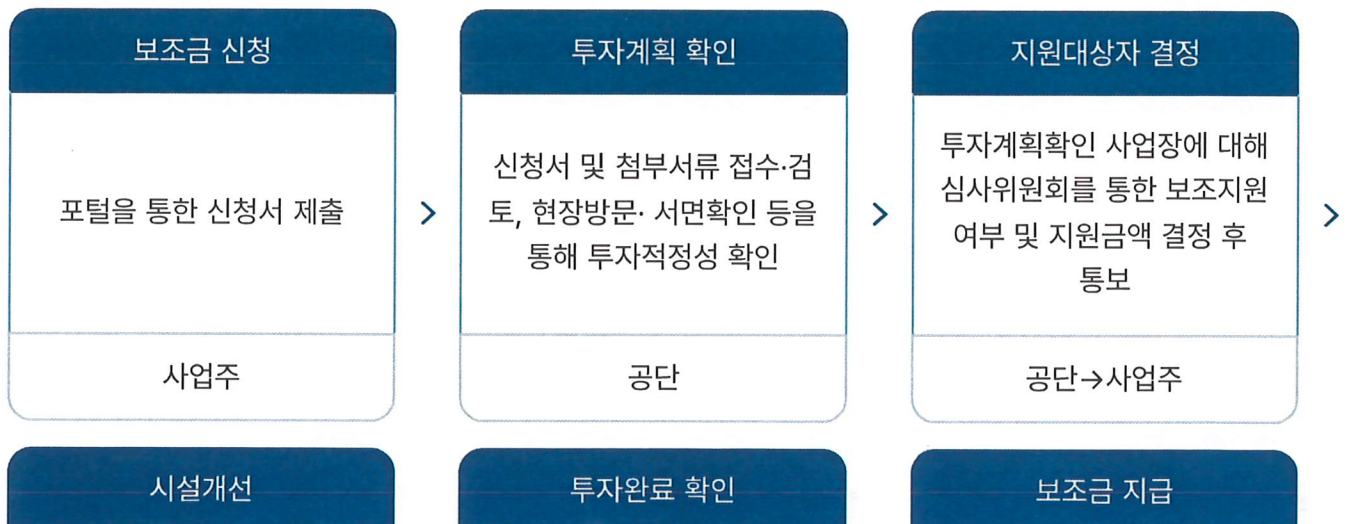
• **(지원조건)**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*

-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80%, 부가세 미지원

-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,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

※ 고용증가 사업장,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,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,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(각각 최대 1,000만원)

• 사업 추진 절차



제출한 투자계획에 근거한
시설개선 (4개월 이내) 후 투
자완료 확인 요청

사업주→공단

>

현장방문을 통해 시설개선
내용에 대한 이행과 적정성
여부 확인

공단

>

투자완료 확인으로 개선의
적정성 확인 후 최종 보조금
지급

공단→사업주

안전동행 지원사업(격차완화)

1. 개요

- 중소기업에 제조공정의 유해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·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

2. 대상

• (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)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, ?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?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[별표3]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^[1] 사업주(사내하청 제외)

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지원 대상 사업장

① 뿌리공정 ^[2] 보유사업장	② 고위험 6대 업종 및 전지제조업 사업장	③ 상생협약 체결사업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'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조 - 소성가공 - 표면처리기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'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 중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(218) -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(209) -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(229) - 식료품제조업(200) -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(204) 	<p>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</p>

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지원 대상 사업장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통계법'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중, -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제조업(282) 	
--	--	--

[1] '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'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(2*****)

[2] 뿌리기업 확인서(유효기간 내)에 활용기술이 주소, 소성, 표면처리로 표기된 사업장

• (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)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, ?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?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[별표3]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, 원청 등으로부터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업주(사내하청 제외)

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대상 사업장

① 원청 직접지원	②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	③ 공단 상생협력사업 연계지원
원청(50명이상)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 받거나,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	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^[1]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·하청 상생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	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(공단)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

[1] 상생협력법에 따라 설립된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

3. 절차 및 내용

- (지원내용) 위험성평가 결과,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제조시설이 있는 공장동내 화재·폭발예방 및 대응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(단, 공정개선과 무관한 일부품목은 지원제외)

※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은 공정개선과 연계하여 지원

Ⓢ 지원불가 사항

- 중고품 또는 재생품제조공정과 전기적·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- 제조공정과 전기적·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이동대차 (갠트리리프트, 에어발란스 포함) 등 인력운반기계
- 이동대차(갠트리리프트, 에어발란스 포함)의 품질 검사·측정 목적의 기계·기구
- 원재료 또는 생산품(중간생산품 포함)의 품질검사 측정목적의 기계기구
- 작업대(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), 공구함,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
- 포터블 용접기, 소형 식품혼합기,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·휴대가 용이한 전기·기계기구 및 수공구
- 전기·소방·조명·환기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 개선
-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·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
- 본 사업을 통한 개선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(원가검토비용 제외)

• **지원비율 및 한도**

구분	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	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
지원비율	(정부) 공단 판단 금액의 50%	(정부) 공단 판단 금액의 40%, (원청) 소요비용의 최소 10%(또는 2천만원)
지원한도	(정부) 1억원 한도	(정부) 8천만원 한도
보조금	지원비율 적용된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	
비고	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(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)	

※ 25년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(공단)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원청부담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

안전동행 지원사업(상생협력지원)

1. 개요

- 중소기업에 제조공정의 유해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·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

1. 대상

• (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)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, ?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?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제1항 [별표3]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 [1] 사업주(사내하청 제외)

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지원 대상 사업장

① 뿌리공정 [2] 보유사업장	② 고위험 6대 업종 및 전지제조업 사업장	③ 상생협약 체결사업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’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조 - 소성가공 - 표면처리기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 중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(218) -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(209) -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(229) - 식료품제조업(200) -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(204) - 금속제련업(219) ‘통계법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중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제조업(282) 	<p>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</p>

[1] 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’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(2*****)

[2] 뿌리기업 확인서(유효기간 내)에 활용기술이 주조, 소성, 표면처리로 표기된 사업장

• (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)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, ?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?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제1항 [별표3]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, 원청 등으로부터 공정개선에 소요되

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업주(사내하청 제외)

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대상 사업장

① 원청 직접지원	②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	③ 공단 상생협력사업 연계지원
원청(50명이상)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 받거나,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	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^[1]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·하청 상생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	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(공단)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

[1] 상생협력법에 따라 설립된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

1. 절차 및 내용

- (지원내용) 위험성평가 결과,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제조시설이 있는 공장동내 화재·폭발예방 및 대응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(단, 공정개선과 무관한 일부품목은 지원제외)

※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은 공정개선과 연계하여 지원

1. 지원불가 사항

- 중고품 또는 재생품제조공정과 전기적·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- 제조공정과 전기적·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이동대차(갠트리리프트, 에어발란스 포함) 등 인력운반기계
- 이동대차(갠트리리프트, 에어발란스 포함)의 품질 검사·측정 목적의 기계·기구
- 원재료 또는 생산품(중간생산품 포함)의 품질검사 측정목적의 기계기구
- 작업대(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), 공구함,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
- 포터블 용접기, 소형 식품혼합기,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·휴대가 용이한 전기·기계기구 및 수공구
- 전기·소방·조명·환기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 개선
-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·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
- 본 사업을 통한 개선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(원가검토비용 제외)

• 지원비율 및 한도

구분	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	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
지원비율	(정부) 공단 판단 금액의 50%	(정부) 공단 판단 금액의 40%, (원청) 소요비용의 최소 10%(또는 2천만원)
지원한도	(정부) 1억원 한도	(정부) 8천만원 한도
보조금	지원비율 적용된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	
비고	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(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)	

※ 25년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(공단)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원청부담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

안전동행 지원사업(상생협력기금)

1. 개요

- 중소기업에 제조공정의 유해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·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

1. 대상

• (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)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, ?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?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제1항 [별표3]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 [1] 사업주(사내하청 제외)

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지원 대상 사업장

① 뿌리공정 [2] 보유사업장	② 고위험 6대 업종 및 전지제조업 사업장	③ 상생협약 체결사업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‘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’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조 - 소성가공 - 표면처리기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 중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(218) -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(209) -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(229) - 식료품제조업(200) -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(204) - 금속제련업(219) • ‘통계법’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중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제조업(282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

[1] 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’ 제14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(2*****)

[2] 뿌리기업 확인서(유효기간 내)에 활용기술이 주조, 소성, 표면처리로 표기된 사업장

• (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)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, ?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?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제1항 [별표3]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원청 등으로부터 공정개선에 소요되

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자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업주(사내하청 제외)

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대상 사업장

① 원청 직접지원	②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	③ 공단 상생협력사업 연계지원
원청(50명이상)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지원 받거나,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사업장	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^[1]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·하청 상생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	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(공단)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아 실시한 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한 사업장

[1] 상생협력법에 따라 설립된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

1. 절차 및 내용

- (지원내용) 위험성평가 결과, 위험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제조시설이 있는 공장동내 화재·폭발예방 및 대응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(단, 공정개선과 무관한 일부품목은 지원제외)

※ 작업장 안전디자인 개선은 공정개선과 연계하여 지원

1. 지원불가 사항

- 중고품 또는 재생품제조공정과 전기적·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
- 제조공정과 전기적·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이동대차(갠트리리프트, 에어발란스 포함) 등 인력운반기계
- 이동대차(갠트리리프트, 에어발란스 포함)의 품질 검사·측정 목적의 기계·기구
- 원재료 또는 생산품(중간생산품 포함)의 품질검사 측정목적의 기계기구
- 작업대(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), 공구함,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
- 포터블 용접기, 소형 식품혼합기,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·휴대가 용이한 전기·기계기구 및 수공구
- 전기·소방·조명·환기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 개선
-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·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
- 본 사업을 통한 개선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(원가검토비용 제외)

• 지원비율 및 한도

구분	대·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	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
지원비율	(정부) 공단 판단 금액의 50%	(정부) 공단 판단 금액의 40%, (원청) 소요비용의 최소 10%(또는 2천만원)
지원한도	(정부) 1억원 한도	(정부) 8천만원 한도
보조금	지원비율 적용된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	
비고	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(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)	

※ 25년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(공단)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원청부담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

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지원

1. 개요

-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·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 저리의 용자금 지원으로 안전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및 사고사망 감축에 기여

※ 지원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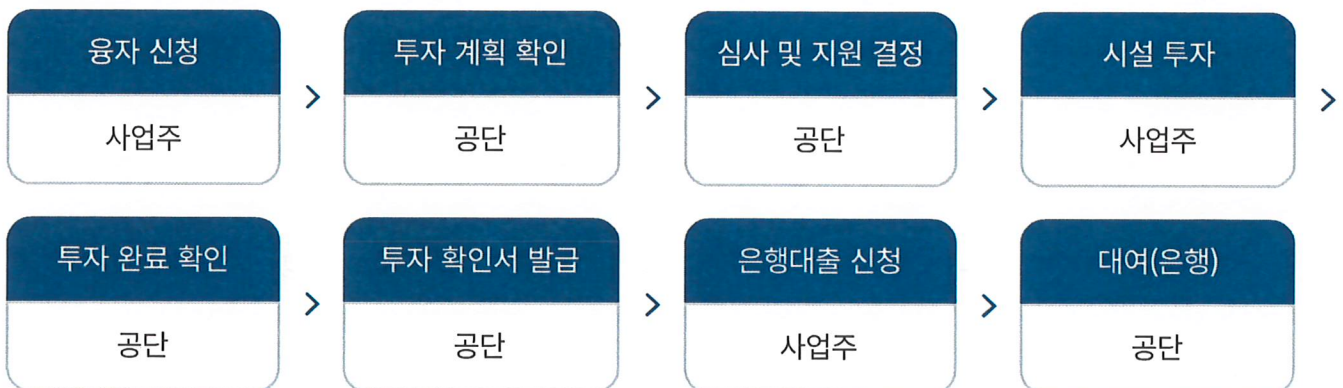
2. 대상

-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
-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

3. 절차 및 내용

- 지원조건 : 사업장당 10억원한도(1.5%금리, 3년거치 7년 분할상환)

- 지원절차



- 지원품목: 유해 또는 위험기계·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(부속설비^[1] 포함)

프레스	공작기계	크레인	사출성형기	산업용 로봇
				
국소배기	근골예방	지게차	휴게시설	체력증진시설
				

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)

1. 개요

- **(사업목적)**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

2. 대상

- **(지원대상)** 허가대상·관리대상 유해물질, 분진, 조리부산물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*

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포함

• (지원품목)

- 관리대상유해물질, 허가대상유해물질,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(금속가공유 포함), 분진작업,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
-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
-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^[1]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·배기환기장치
- [1]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(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

- **(지원금액)**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,000만원

- 단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,500만원

- **(지원비율)** 공단 판단 금액의 70%

※ 공단 일선기관 현황 및 신청서류 안내

- 포털 > 사업신청·조회 > 지원사업 신청 > 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 설치비용) > 공지사항

• (지원절차)



• (접수 및 문의처) 1644-8845 (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대표번호)

건강일터 조성지원(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)

1. 개요

- 폭염 및 온열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, 설비의 설치 비용 지원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2. 대상

- 실내·외 고열 및 폭염 취약작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

① 지원대상 제외

- 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
- 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
-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
- ⑤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⑥ 건강일터 조성지원(타 품목),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, 안전일터 조성지원,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

3. 절차 및 내용

• 지원품목

- 온열질환 예방장비: 이동식 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, 그늘막
- 온열환경 개선설비: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, 제트팬, 실링팬

• 지원금액

- (한도액)

- 온열질환 예방장비: 동일 사업주 당 최대 2천만원
- 온열환경 개선설비: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

- (지원비율)

온열질환 예방설비	온열환경 개선설비	
	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^[1]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	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
공단 판단금액 ^[2] 의 70%	공단 판단금액의 70%	공단 판단금액의 5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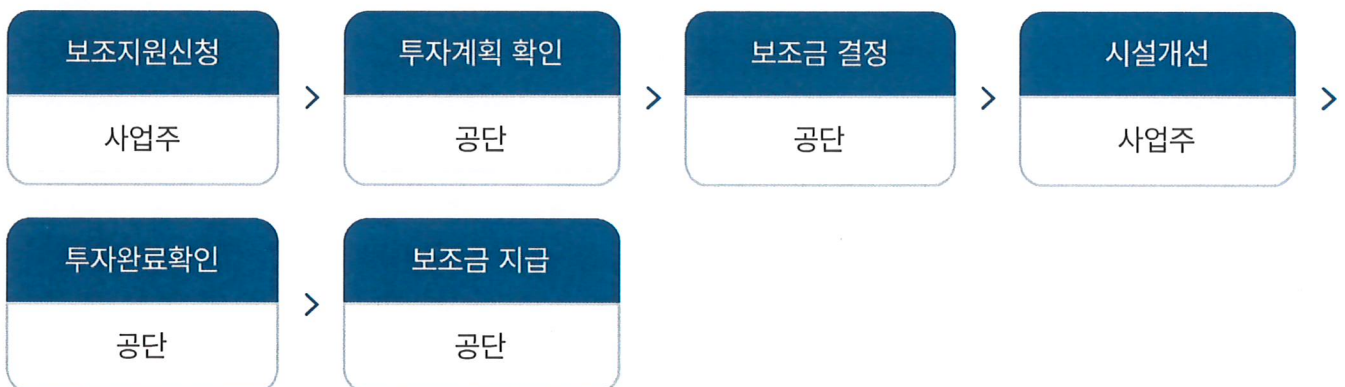
[1]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

[2] 공사원가계산 등을 검토한 공단의 판단금액

• 문의처

- 대표전화 : 1644-8845(지역별 공단 담당자로 연결)

• 지원절차



건강디딤돌

1. 개요

- **(사업목적)**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 기초제도 **[1]**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

[1] [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](#) 

ⓘ 「건강 디딤돌」사업

-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,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

2. 대상

• (지원대상)

작업환경측정	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[1]
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	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[2]
	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[3]
	공동주택 [4] 에서 경비·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
[1]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관련 별표 21 「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」보유사업장에 한함 [↓](#)

[2]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「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」보유사업장에 한함 [↓](#)

보험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

① 5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

-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**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**로 50인 미만 여부 판단

• (지원금액)

- **작업환경측정** 신규 사업장과 기존 측정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

작업환경측정	신규 측정	최초 측정 비용에 대해 전액지원(최대 100만원)
	기존 측정	측정비용의 80% 지원(최대 40만원)
※ 신규 측정 사업장 : 과거 3년 동안(2023년 이후) 측정 미 실시 사업장		

※ 측정비용 : 공단 산정금액

- (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)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별표24에 따른 제1, 2차 검사 항목에 대하여 비용지원

특수건강진단	30인 미만 사업장	특수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지원
	30인 ~ 50인 미만 사업장	특수건강진단 비용의 90% 지원
	공동주택	특수건강진단 비용의 90% 지원
	건설일용직 (원도급 공사금액 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0억 미만 :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전액 지원 • 50억~800억 미만 :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70% 지원 • 800억 이상 :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60% 지원

※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각각 연 1회씩 지원 가능하므로 이미 지원 받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비용지원 불가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 (단,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 주기 유해인자에 대하여 최대 연 2회까지 지원 가능)

3. 절차 및 내용



• **(신청방법)** 포털의 건강디딤돌 『사업 신청』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

※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

- 포털 > 사업신청·조회 > 지원사업 신청 > 건강디딤돌 > 신청하기

• **(대상선정)** 포털을 통해 신청·접수된 사업장의 50인 미만 여부 등을 검토 후 잔여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 선정

- 포털의 건강디딤돌 『비용지원 결과확인』을 통해 신청 결과 확인 가능

- 신청 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공단 광역본부/지역본부/지사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

- 각 광역본부/지역본부/지사 담당자는 [건강디딤돌 공지사항](#)을 참조

• **(작업환경측정,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)**

• 지원 가능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, 소규모사업장 건강 디딤돌 신청 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작업환경측정 또는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

•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 선정하되,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
- **(작업환경측정)** 사업주는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택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

※ 건강디딤돌 참여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: [건강디딤돌 공지사항](#)을 참조

- **(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)**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

※ 건강디딤돌 참여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: [건강디딤돌 공지사항](#)을 참조

-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수검자의 검진 유해인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업환경측정 결과표, 물질안전보건자료,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 등을 검진 기관에 적극 제공
 -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 건설일용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
 - **(비용청구)**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를 공단에 전송·비용 청구
 - **(비용지급)** 공단은 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, 신뢰성 등을 심사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
 - **(비용지급결과 통보 및 설문조사 실시)** 공단은 비용지급 결과 확인 안내를 신청자에게 SMS로 통보하고, 비용지원 사업의 만족도,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
- ※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(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)
- **(사후관리·모니터링)** 사후조치 및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·모니터링 실시
 - 현장 모니터링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(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) 및 제201조(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)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

직종별 건강진단

1. 개요

- **(사업목적)**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필수노동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 유소견자를 사후 관리하여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토록 하기 위함

2. 대상

• (지원대상)

- 택배기사 · 배달종사자 · 대리운전자 · 온라인배송기사 · 화물차주 · 보험설계사 · 방문 판매업자 · 학습지 방문강사 · 소프트웨어 기술자 · 골프장 캐디 · 대출 모집인 ·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·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· 대여제품 방문점검원

- 건설기계운전자
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 환경미화원(50인 미만)

※ 5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: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산재보험 피보험자수(신청일 기준)로 50인 미만 여부 판단

※ 지원대상 제외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 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기업에서 종사하는 자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

- **(지원금액)** 전체 건강진단 비용의 80%(1·2차 항목)

직종	표적 질환
보험설계사 · 학습지 방문강사 · 대출모집인 ·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· 가전제품 수리원 ·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· 방문판매업자 · 골프장 캐디 · 소프트웨어 기술자	뇌·심혈관질환

직종	표적 질환
건설기계운전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호흡기질환 뇌·심혈관질환
환경미화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호흡기질환 뇌·심혈관질환

3. 절차 및 내용



- **(신청방법)** 포털의 직종별 건강진단 『사업 신청』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
 ※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
 - 포털 > 사업신청·조회 > 지원사업 신청 > 직종별 건강진단 > 신청하기
- **(대상선정)** 포털을 통해 신청·접수된 사업장의 지원대상 여부(직종, 사업장 규모 등)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신청결과를 SMS로 전송
 ※ 비용지원 신청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,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
 -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포털을 통해 직종별 건강진단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**직종별 건강진단 수행기관**에 제출 후 건강진단 실시
 ※ 반드시 대상 여부 확인 후 건강진단기관 방문(대상 선정 이후 검진 건에 대해서만 비용지급 가능)

※ 출력방법 : 포털 → 사업신청·조회 → 지원사업 신청 → 직종별 건강진단 → 비용지원 신청결과 확인

※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
- (건강진단 실시) 직종별 건강진단기관(특수건강진단기관)에서 건강진단 실시
- (비용청구) 직종별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를 공단에 전송·비용 청구
- (비용지급) 공단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, 신뢰성 등을 심사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
- (건강이상자 사후관리) 건강진단 결과, 유소견자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는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실시

뇌·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: 심층건강진단 (비용지원)

1. 개요

- 뇌·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에게 뇌·심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검사를 지원해 뇌·심혈관질환 위험성이 높은 근로자를 조기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함

2. 대상 및 선정기준

- 지원대상자

① 기존 건강진단결과(일반·특검 등)에서 뇌·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

① 아래 뇌·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

-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
- 공복혈당 126mg/dl 이상
- 총콜레스테롤 \geq 240mg/dl 또는 LDL \geq 160mg/dl 또는 중성지방 \geq 200mg/dl
- 비만(BMI \geq 30) 또는 복부비만(남 \geq 90cm, 여 \geq 85cm)

※ 건강진단결과 최근4년 이내의 검진 결과지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 **이상 수치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만 지원 가능** 합니다.

※ **약물 복용** 등으로 혈압, 혈당, 콜레스테롤 등이 조절되어 **검진결과지상 이상수치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1번 지원조건에 미해당**

② 뇌·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이상 등급에 해당하는 자

③ 일반검진결과(국가검진)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% 이상인자

-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, DN 판정 받은 자
- ⑦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(특별연장근로 인가)
- ⑧ 제59조(특례업종)의 적용을 받는 자

※ (지원불가 대상) 뇌·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, 심장수술(시술)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중인 자

※ (지원대상 제외) 사업주(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)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(대기업 집단) 소속 회사 종사자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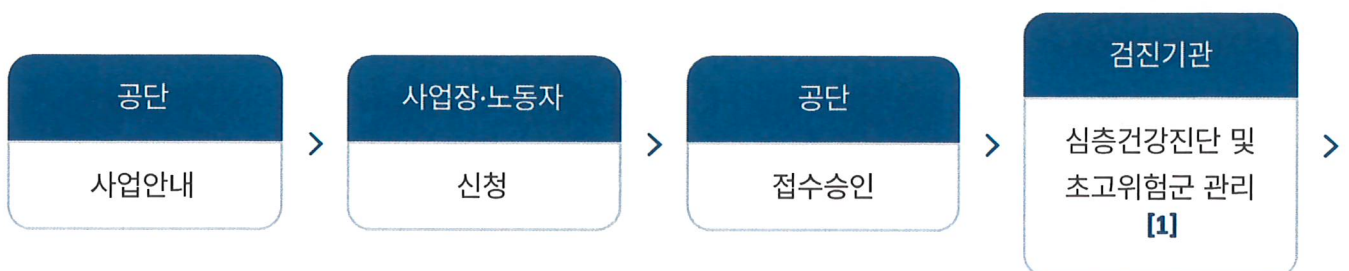
공공단체·국가·지자체·공기업·공공기관 등 종사자

- 선정기준 : 우선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분기별 선정

우선순위	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
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 건강진단결과(일반·특검 등)에서 뇌·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• 뇌·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인 경우 • 일반검진결과(국가검진)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% 이상인 자 •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•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, Dn 판정 받은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2	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(특별연장근로 인가)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 • 제59조(특례업종)의 적용을 받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4	만 55세 이상

3. 절차 및 내용

- 사업절차





[1] 심층건강진단 결과, 사후관리가 필요한 초고위험군(희망자 포함)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해 정밀검사 (의사소견 소견에 따라) 및 정기적 건강상담(2주 이상 간격) 실시

• 사업내용

- (기본 검사 지원) 156,000원(기본 검사비용 195,000원의 80%)

구분	검사항목
진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진 및 의사 상담 • 뇌·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
계측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체계측 • 혈압측정
혈액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화혈색소 • 총콜레스테롤 • HDL콜레스테롤 • 트리글리세라이드 • LDL콜레스테롤 • 혈청 크레아티닌 • 신사구체여과율 • 공복혈당
소변검사	요단백
정밀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동맥초음파 • 관상동맥 비조영CT(석회화 점수) • 심전도

- (초위험군 관리) 심층건강진단 결과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정된 수진자 또는 검진을 실시한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밀검사 추가 지원

구분	심장구조 정밀검사	심혈관계 정밀검사	뇌혈관계 정밀검사
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

구분	심장구조 정밀검사	심혈관계 정밀검사	뇌혈관계 정밀검사
검사항목	심장초음파 + 건강상담 2회 이상	관상동맥 조영 CT + 건 강상담 2회 이상	뇌혈관 MRA + 건강상 담 2회 이상
인정금액	12.5만원+α ^[1]	20만원+α	20만원+α
지원금액 ^[2]	10만원+α	16만원+α	16만원+α

[1] 건강상담 상담비용 대면 2만원, 유선 1.5만원 지원

[2] 지원금액은 검사비용의 80%로 20%(심장초음파 2.5만원, 관상동맥 조영CT 4만원, 뇌혈관 MRA 4만원)는 자부담